발전기금조성 및 기탁자예우에 관한 세칙

제정 2001. 11. 16. 세칙 제107호
개정 2013. 4. 10. 세칙 제190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발전기금 조성 및 기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원장 명의의 기부증서를 발급한다.

제3조(기금조성 공로자 예우) 발전기금 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기금이 조성되도록 특별히 협력한 사람(또는 기관)은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013.4.10.>

제4조(기금기탁자 성명각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탁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탁자의 송덕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한다. <2013.4.10.>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제5조(기탁자에 대한 예우) ①기금기탁자에게는 기부증서, 기념품 제공 외에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2013.4.10.>

구분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감사패	○	○	○	○	○
원내소식지,달력 발송	○	○	○	○	○
명절선물발송	1년	3년	5년	10년	평생
원내발간물 무료제공[1]	○	○	○	○	○
원내시설 무료이용[2]	○	○	○	○	○
게스트하우스		○	○	○	○
명칭부여[3]		○	○	○	○
수강료할인[4]	50%	70%	100%	100%	100%
동판제작[5]			○	○	○
흉상부조제작[6]				○	○

1)원내 발간 책자 중 기탁자가 수령을 원하는 책자
2)도서관과 주차장,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등 원내 시설 무료 이용
3)기탁자가 지정한 명칭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명명함.
4)본인 및 직계가족이 청계서당 등 본원에서 개설되는 강좌를 수강할 경우 해당 요율의 수강료 감면(회수제한 없음)
5)기탁자의 초상 또는 성함 등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원내 지정된 장소에 부착
6)기탁자의 흉상(40㎝×50㎝)을 제작하여 지정한 장소에 부착

②기부액을 분할 납부할 경우, 누적액이 해당 액수에 도달하였을 때 1항의 예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3.4.10.>

제6조(세부사항) 이 세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2013.4.10.>

부 칙

이 세칙은 2001년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